

교제폭력 가해자 특성과 재범요인에 따른 피해자의 심리·사회적 경험에 대한 연구: 판결문과 범죄피해평가 보고서를 중심으로

성 현 준[†] 성 나 경^{††} 이 지 혜^{†††}
충북경찰청 인현중학교 전남대학교


이 연구는 교제폭력 재범 가해자의 특성을 규명하고, 재범요인에 따른 피해자의 심리·사회적 경험을 탐색하여 피해자 보호·지원 및 실무 개입의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자료는 교제폭력 사건 1심 판결문 367건과 범죄피해평가 보고서 52건이며, 판결문 분석을 통해 재범 위험요인을 도출하고 범죄피해평가보고서에 드러난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심리·사회적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교제폭력 재범 집단은 초범 집단에 비해 피해자의 나이가 상대적으로 많고, 교제기간이 짧았으며, 계획, 새로운 공격성, 직접적 위협, 가해자의 요인과 환경, 부정적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특히 재범 집단에서는 위험평가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어, 교제폭력의 강력범죄화 위험을 판단할 때 가해자 요인, 환경에 대한 파악이 부각되었다. 피해자의 심리·사회적 경험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재피해로 인한 일상 기능의 저하와 신체화, 자기비난 및 자기분노가 두드러졌고, 관계 단절과 경제·직무 영역의 어려움 등 사회적 피해가 동반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교제폭력 위험평가에서 관계 변수(연령·교제기간)와 위협 행동, 가해자 요인·환경을 통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며, 피해자 보호 실무에서 신변보호를 전제로 한 적극적 개입과 사회적 지지 회복을 포함한 다층적 지원체계의 구축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교제폭력, 재범요인, 표적화된 폭력, 위험평가, 피해자 경험, 판결문, 범죄피해평가

† 제 1저자: 성현준, 충북경찰청 경장, E-mail: sungtt@naver.com

†† 제 2저자: 성나경, 인현중학교 전문상담교사

††† 교신저자: 이지혜, 전남대학교 교육학과 부교수,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E-mail: leeji@jnu.ac.kr

 Copyright © 2026, The Korean Society for Woman Psychology.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 Licenses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최근 교제폭력은 심각한 사회적 당면 과제로 부상하며 언론과 대중의 집중적인 주목을 받았다. 법무부(2025) 범죄백서에 따르면, 전체 범죄 발생 건수는 10년 전과 비교하여 점진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과 대조적으로 교제폭력은 2014년 11,216건에서 2023년 21,392건으로 집계되어 약 90% 증가하였다. 특히, 2025년 기준 교제살인(전·현 배우자 및 연인 대상, 미수 포함) 범죄자는 총 219명으로 파악되었는데, 성별 분포는 남성이 75.8%, 여성이 24.2%를 차지하였으며, 연령대별로는 60대가 34.3%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성평등가족부, 2025). 주목해야 할 지점은 폭행이나 상해 등 일반적인 폭력 범죄가 전년 대비 7.5% 감소한 것과 달리, 살인 및 치사 등 극단적인 강력범죄는 오히려 전년 대비 6.8%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교제폭력 양상이 점차 흉폭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결과는 구체적 사건에서도 확인된다. 2025년 5월 동탄에서는 전 연인이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후 납치·살인에 이르는 교제살인 사건이 발생하였고(박고은, 이승욱, 2025년 6월 22일), 7월에는 울산에서 피해자의 이별 통보 이후 가해자 장형준이 6일간 스토킹을 지속한 뒤 피해자가 있는 병원에 찾아가 살해를 시도하였으나 주변 시민의 제지로 미수에 그친 사건이 보고되었다(현예슬, 2025년 12월 19일). 8월 대전에서는 가해자 장재원이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사용해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였으며(연합뉴스, 2025년 8월 11일), 2026년 1월 공주에서도 60대 남성이 헤어진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보도되었다(KBS, 2026). 교제살인 사건이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다수의 시민이 분노와

불안을 동시에 경험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연일 발생하는 교제폭력이 치명적인 강력범죄로 전이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미비한 법적 대응 체계가 지목된다(장미혜 외, 2021). 그간 교제폭력을 ‘데이트폭력’으로 명명한 법안들이 발의된 바 있으나, 개념과 관련된 정의와 범죄로 간주하는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입법적 진전을 거두지 못한 채 현재 7개의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인 상태이다(주재영, 2025). 이로 인해 실무 현장에서는 교제폭력에 전담 독립 법률의 부재 속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준용하여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수사 과정 역시 개별 죄명(폭행·상해·협박 등)으로 접근한 뒤 사후적으로 가·피해자 관계를 확인하여 교제 관계 기반의 폭력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법률들은 교제폭력과 상당 부분 접점을 공유함에도 불구하고, 연인 관계만이 갖는 특수성을 포괄적으로 반영하기에는 명확한 한계를 지닌다. 가령, 법적 의미의 ‘동거’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장기간 생활을 공유하는 관계를 사실혼에 준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혹은, 온라인을 통해 만나 단기간 교제했음에도 가해자의 폭력성이 높아 즉각적인 격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어떠한 보호조치를 우선 적용할 것인지 등 입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결국 교제폭력은 단순한 ‘관계 내 갈등’을 넘어 젠더 기반 폭력(Gender-Based Violence)의 관점에서 재해석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분석한 피해자의 76%가 여성이고, 최근 발생한 교제살인 피해자 전원이 여성이라는 점은 이러한 범죄가 가부장적 통제 욕구 및 여성을

소유물로 간주하는 왜곡된 관계 인식과 밀접하게 결합해 있음을 시사한다(정희진, 2016). 따라서 교제폭력에 대한 개입은 개별적 피해 보호 차원을 넘어, 젠더 불평등이라는 구조적 모순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포함해야 한다.

젠더 기반 폭력의 관점은 사회 구조와 질서가 작동하는 관점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이분법적 성별 개념에 고착될 수 있는 가·피해자의 맥락을 재구성한다. 이는 여성 폭력이 만연하고 지속되는 성불평등한 사회 구조적 배경과 원인을 규명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의를 지닌다(김효정, 2024). 다만 최근 통계는 교제폭력의 양상이 더욱 복잡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남성 피해자의 비율이 2022년 18.2%에서 2023년 19.4%, 2024년 21.5%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경찰청, 2025), 특히, 통제 행동과 같은 비신체적 폭력 경험까지 범주를 넓힐 경우 잠재되어 있던 남성 피해 실태가 가시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제폭력이 살인이나 치사 등 치명적인 강력범죄로 전이되는 지점에서는 여전히 여성 피해자의 취약성과 위험성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다(성평등가족부, 2025). 이는 교제폭력을 단순히 개인 간의 갈등으로 치부할 수 없으며, 가부장적 통제 욕구와 왜곡된 소유 의식이라는 구조적 요인을 배제한 채로 본질적인 대책 마련이 불가능함을 시사한다(한예담, 조은경, 2025). 따라서 교제폭력에 대한 개입은 가시화된 피해 실태를 포괄하는 동시에, 강력범죄의 근저에 자리 잡은 젠더 불평등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

교제폭력의 위험성이 극대화되는 원인은 가·피해자 사이의 특수한 ‘관계적 맥락’에서 기인한다. 교제폭력은 일반적인 범죄와 달리

가해자가 피해자의 생활반경, 대인관계, 취약지점 등 지극히 사적인 정보를 상세히 파악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신지연, 최수미, 2017). 피해자 역시 면식 없는 타인이 아닌 ‘연인’으로부터 정서적·신체적 침해를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폭력이고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가해자는 ‘사랑’이나 ‘관심’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피해자의 상황을 장악하고 의도적·계획적인 신체적 통제와 심리적 압박을 병행하기 때문이다(정희진, 2016).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폭력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둔화 과정이다. 이는 관계 초기에 급격히 이뤄지기보다, 경미한 수준의 폭력이 반복되고 점차 강도가 높아지는 폭력의 연쇄 과정을 통해 고착화된다(권준성, 한민경, 2025). 그 결과 피해자는 폭력의 원인을 가해자의 결함이나 위법성에서 찾기보다, 자신의 행동이나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고 자기비난을 하며 내면화 증상을 보이기도 한다(김성령 외, 2025).

또한 교제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 쌍방에게 직·간접적으로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적 특성이 있다. 관계 내 갈등이 발생할 경우, 초기에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시도하는 듯 보이나 시간이 지날수록 일상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갈등이 불거지는 것을 강제로 억누르는 방식으로 전이되기도 한다. 폭력을 가한 이후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회유하며 자신의 행위를 무마하지만, 갈등 상황이 재발하면 가해자가 다시 동일한 폭력을 반복하는 악순환이 굳어진다(우희진 외, 2017). 이러한 반복되는 과정에서 가해자는 죄책감이 둔화되며 자신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경향이 강화되는 반면, 피해자는 폭력을 허용하는 임계치를 점차 높이며, 폭력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인다(강소영, 2025). 더불어 ‘교제 관계’의 사적인 특성은 폭력이 발생하더라도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며, 피해자의 객관적 상황 판단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피해자가 관계 종결 의사를 통보하는 시점에 폭력의 강도가 급격히 증가하거나 치명적인 강력범죄로 직결되는 경우가 빈번하다(Fernandez-Antele et al., 2020). 따라서 교제폭력의 환경적·관계적 특성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은 수사 실무에서 피해자의 위험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핵심 지표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교제폭력 관련 선행연구들은 주로 가해자의 범죄 행위와 특성, 또는 발생 원인을 규명하는 데 집중된 경향이 강하다. 반면, 피해자의 심리적·사회적 경험을 심층적으로 고찰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입 및 조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진한 실정이다. 실제로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 ‘교제폭력’을 주제로 검색한 결과, 국내 학술논문은 총 140건으로 확인되었으나, 여기에 ‘피해자’를 추가하여 검색하면 47건으로 급감한다(RISS, 2025). 이 중에서도 민간 경호 관점에서 피해자 보호 정책을 제언한 연구(신소영, 곽형근, 2024)를 제외하면, 대다수는 교제폭력 관련 입법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법제도적 논의에 치중되어 있다. 또한 교제폭력이 중대한 사회적 의제로 부상한 2025년에는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으나, 이 역시 교제폭력을 주제로 한 법정 논쟁(주재영, 2025)이나, 경찰 단계에서의 대응 체계(박종철, 윤철희, 2025), 강압적 통제(김성령 외, 2025; 한예담, 조은경, 2025) 등과 같은 가해자의 특성 분석에 편중되었다. 해당 연도에만 42건의 논문이 게재되었음에도 피해자의

관점에서 통합적인 조력 체계와 같은 보호·지원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부족한 상태이다(RISS, 2025).

사회적 관심에 따라 관련 연구가 축적되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나, 시간이 지나 대중적인 관심이 휘발됨에 따라 유사 범죄가 반복되고 사건이 발생할 때만 다시 이슈화되는 악순환이 지속되는 점은 실책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일회성 논의를 넘어 교제폭력 피해자의 일상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제폭력 피해자의 약 76%가 여성으로 보고되며(성평등가족부, 2025), 최근 발생한 교제살인의 피해자 전원이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심리·사회적 경험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기반한 효과적인 개입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이다. 이 연구는 단순히 피해자의 경험을 밝히는 데 그치지 않고, 재범을 야기하는 가해자 측의 요인을 규명하고, 동시에 그 요인이 피해자의 심리·사회적 경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함으로써 더욱 세부적인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교제폭력 사건의 판결문을 활용하여 가해자의 재범 특성을 분석하고, 범죄피해평가보고서를 통해 피해자가 겪는 심층적 경험을 고찰하여 정책적 제언과 실무적 개입 방안을 구체화하는 데 목적을 둔다.

다만 이 연구는 가해자의 특정 재범 요인에 따른 해당 피해자의 경험을 일대일로 비교 분석하기보다는 두 집단의 특성을 개별적으로 정밀하게 규명하고 이를 통합하여 실무적 함의를 도출하는 방식을 취하고자 한다. 사건 판결문(가해자의 행위 중심)과 범죄피해평가(피해자의 진술 중심) 자료가 각기 다른 사건

에서 수집되었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데이트 폭력에서 교제폭력으로의 범죄명 변경

우리나라에서 교제폭력은 1990년 송림동 토막살인 사건(KBS, 1990), 2014년 대구 이별 보복 살인(온라인 중앙일보, 2014년 5월 22일) 등 잔혹한 강력범죄의 형태로 지속되어 왔으나, 이에 대한 독립적 입법 논의는 2016년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발의(박남춘 의원 대표발의안, 2016)를 기점으로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이후 10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명확한 법적 정의와 범주의 부재로 인해 입법적 진전은 정체되어 있다.

범죄에서 ‘죄명’의 명명은 사건의 본질을 규정하고, 가해 행위의 불법성과 침해 정도를 사실에 근거해 드러내는 핵심 요소이다(James & Fiona, 2008). 최근 용어의 사용에 있어 기존의 ‘데이트폭력’이 범죄의 중대성을 희석하고, 낭만화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김한균, 2023)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와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교제폭력’으로 명명할 것을 주장하였다(이주빈, 오세진, 2023년 5월 29일). 이는 관계의 특수성 뒤에 은폐된 범죄적 본질을 명확히 규명하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안에서 제시되는 정의의 핵심 구성은 대체로 유사하다. 예컨대 법안에 적시된 ‘데이트폭력’의 정의는 서로 합의하에 교제하고 있는(했었거나) 관계에서, 상호 간의 합의 없이 신체적·정서적·경제적 폭력(위협 포함)을 행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스토킹(잠복, 접근, 지켜보기, 기다리기 등) 행위를 하는 것으로 제시된다(표창원 의원 대표발의안, 2017). ‘교제폭력’의 정의는 ‘교제’와 ‘폭력’을 분리하여 규

정하는 형태로 제시되기도 하는데, 교제란 결혼 또는 지속적 친밀관계의 형성·유지를 목적으로 하며, 신체적·정서적 또는 성적 유대가 존재하나 사회 관념상 부부로 인정될 만한 공동생활의 실체(사실혼)에 이르지 않는 관계를 포함한다. 또한 당사자 일방이 교제관계로 인식하고 있거나, 관계의 기간 및 성격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교제관계로 인정되는 경우를 교제로 정의한다. 폭력은 상대방에게 해를 끼칠 의도를 가지고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된다(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안, 2025).

이 연구는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과 선행연구의 정의를 준거로 하여 연구의 분석 틀인 교제폭력을 다음과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교제의 (관계적) 범위는 혼인을 전제로 하거나 신체적·정서적·성적 유대를 형성하며, 지속적인 친밀 관계를 유지(또는 유지하려 했던) 중인 이성 및 동성 간의 관계를 통칭한다. 이는 사회 통념상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사실혼)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당사자 일방이 교제관계로 인식하거나 관계의 기간 및 성격상 교제 상태로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포괄한다.

다음으로 폭력의 (행위적) 범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가해지는 물리적(신체적), 정신적(정서적), 경제적, 성적 침해를 의미한다. 여기서 직접적인 가해 행위뿐만 아니라 이를 실행하기 위한 예비 단계로서의 스토킹(잠복, 접근, 주시 등) 및 가해자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강압적 통제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이 연구에서는 교제폭력을 주된 연구개념으로 사용하되 선행연구 인용시 데이트 폭력으로 표기된 경우라도 이 연구에서 정의한 교제폭력과 동일한 개념적 범주로 간주하여 분석

에 포함하였다.

교제폭력 가해자의 표적화된 폭력양상과 위험성 평가

교제폭력 가해자 특성은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고찰되었으며, 최근에는 관계적 맥락 속에서 가해자의 심리적 기제를 규명하려는 시도가 두드러진다. 특히, 내현적 자기가 높은 가해자의 경우 타인의 반응에 과도하게 몰두하며 끊임없이 사회적 비교를 수행하는 경향이 있다(Han et al., 2024).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사소한 거절이나 무시 혹은 자기 뜻에 어긋나는 표현 방식 등을 심각한 박탈감과 열등감으로 왜곡하여 해석한다. 이러한 내적 결핍은 극단적 분노나 적대감으로 표출되며 가해자는 관계 내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 물리적·정서적 폭력 행위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가해자의 공격성이 충동적인지 혹은 계획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연구자 간 일치하지 않는 견해를 보인다. 우선 반응적 공격성 관점에서는 가해자가 상대방의 독립적인 태도를 자신의 통제권 이탈로 인식하거나, 갈등 상황을 주도적 위협 또는 도발로 간주하여 충동적으로 폭력을 행사한다고 설명한다(Boccardo et al., 2021). 반면, 치명적인 강력범죄로 이행되는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치밀하게 준비하는 주도적 공격성의 양상이 나타나기도 한다(Gibson, 2023). 최근 보도된 교제폭력 살인 사례들은 이러한 계획성의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저항이 어려운 시간대를 의도적으로 선택하거나(연합뉴스, 2025년 8월 11일), 피해자의 이동 동선 및 병원 방문 일정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범행을 시도한 정황(현예슬, 2025년 12월 19일)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정보를 독점하고 이를 바탕으로 범행을 구체화했음을 뒷받침한다. 이처럼 교제폭력이 강력범죄로 심화되는 과정에는 가해자의 집착적 정보 수집과 체계적 범행 준비가 수반된다는 점에서 단순한 충동적 범죄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국외에서는 이러한 양상을 ‘표적화된 폭력(targeted violence)’의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한다(홍동규 외, 2025). 표적화된 폭력이란 가해자가 범행 실행 전 표적에 대한 정보를 수집·탐색하고,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주로 이상동기 범죄나 대량살상 범죄 분석에 활용되어 왔으나, 교제폭력 역시 친밀한 관계의 상대라는 특정 대상을 표적으로 삼아 의도적인 공격성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그 궤를 같이한다. 특히 표적화된 폭력은 범행 동기를 구체화하고 실행에 옮기는 과정이 계획적이라는 특징을 가진다(Meloy & Rahman, 2021). 최근 이 개념이 강력범죄 예방의 핵심 기제로 논의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Gill et al., 2017), 교제폭력 가해자가 상실된 통제권을 회복하기 위해 사전에 범행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다는 가설은 충분한 설득력을 갖는다. 따라서 교제폭력을 표적화된 폭력의 관점에서 고찰하는 것은 해당 범죄가 단순한 우발적 사고를 넘어 치명적인 강력범죄로 이행될 수 있는 위험 구조를 내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적화된 폭력의 예방 및 위협평가(threat assessment)를 위해 주로 활용되는 8가지 경고행동체계는 가해자의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유용한 지표이다(Meloy & O’Toole, 2011). 첫째, 계획(pathway) 단계로 가해자가 범행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에서

표적 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이다. 둘째, 집착 (fixation) 단계는 특정 대상에 대한 병적 집착이 강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셋째, 동일시 (identification) 단계는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인식하며 가해 행위를 정당화하는 특성이 두드러진다. 넷째, 새로운 공격성(novel aggression) 단계는 표적 외의 타인에 대한 적대감 표출이나 동물 학대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다섯째, 폭발적 행동(energy burst) 단계는 표적 관련 정보 수집과 접촉 시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이다. 여섯째, 유출(leakage) 단계는 제3자나 SNS 등을 통해 자신의 범행 의도나 절망감을 암시하며 위협 신호를 노출하는 형태다. 일곱째, 최후 수단(last resort) 단계는 자해 · 자살 암시와 함께 극심한 절망을 호소하며 막다른 길에 다다랐음을 알리는 징후이다. 마지막으로 직접적 위협(directly communicated threat) 단계는 표적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고지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고 행동 체계는 교제폭력 가해자가 치명적인 강력범죄로 이행하는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정교한 분석 틀을 제공한다.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가해자의 심리 · 사회적 특성(Han et al., 2024)이 실제 이러한 경고 행동으로 발현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연구는 가해자의 재범 위험성을 해당 경고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면밀히 검토하고자 한다.

교제폭력 피해자의 심리 · 사회적 특성

교제폭력이나 가정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해 사람들은 흔히 피해자가 “왜 신속히 단절하거나 신고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그러나 교제폭

력 피해자가 직면한 현실은 외부의 관점보다 복잡하고 위협하다. 우선 가해자는 피해자의 주거지, 직장, 대인관계 등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할 경우, 가해자의 보복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뒤따른다. 또한 피해자는 추가적인 폭력을 회피하기 위해 가해자와 일시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전략적 선택을 하거나, 주변의 피해자 비난을 우려하여 신고 및 이별 결정을 유보하기도 한다(박언주, 2010). 여기서 국가 지원체계에 대한 불신, 신변 보호 및 비밀 유지의 실효성에 또한 피해자의 공식적 도움 요청을 제약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한다(Fugate et al., 2005). 결국 피해자의 수동적 태도는 피해자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관계 단절과 도움 요청이 결코 용이한 선택이 아님을 역설한다(김효정, 유화정, 2024).

범죄 피해자에게 나타나는 주요 심리 · 사회적 반응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심리적 과각성과 침습이다. 극심한 불안과 공포가 과도한 예민성, 불면, 악몽 등의 형태로 발현되며, 예기치 못한 순간에 사건의 기억이 되살아나는 침습 경험이 동반된다(김성연, 2018). 둘째, 일상 기능 저하 및 스트레스 장애이다. 급성 스트레스 증상은 식욕부진, 대인 기피, 부정적 감정의 고착화로 이어지며 기본적인 생활양식을 파괴하며, 학업이나 업무 수행 등 전반적인 사회적 기능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Palmer, 2012). 셋째, 정서적 불안정성과 분노의 확산이다. 가해자에 대한 직접적 분노를 넘어 자기 또는 가족을 향한 비난 또는 사회 지원체계에 대한 원망으로 확장된다(Brawn, 2007). 넷째, 사회적 고립과 2차 피

해이다. 피해 사실이 알려지며 피해자는 대인 관계가 위축되거나 훼손되며, 특히 가해자의 악의적 소문 유포나 주변의 편향된 비난으로 인해 2차 피해가 발생한다(이무선, 2024).

이러한 특성을 종합하면, 교제폭력 피해자에게 가장 시급하고 핵심적 요구는 신변 안전의 확보이다. 실질적인 안전이 보장될 때 비로소 피해자는 외부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후 수반되는 심리적 외상에 대해서도 보다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해진다. 특히, 교제폭력은 재범 및 추가 피해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범죄 유형이므로 피해자의 심리·사회적 변화 과정을 면밀히 파악하여 이를 신속한 지원체제로 연결하는 대안 모색이 시급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교제폭력 피해자의 심리·사회적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무 현장의 초기 개입 전략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제폭력 관련 1심 판결문을 분석하여 재범 가해자의 특성과 위험요인을 도출하고, 범죄피해평가 보고서 분석을 통해 피해자의 심리·사회적 경험을 입체적으로 탐색하였다. 이는 가해자의 위험 프로파일과 ‘피해자 보호 욕구’를 동시에 조망하기 위함이며, 이러한 통합적 접근은 Dutton과 Goodman(2005)의 ‘피해자 안전 모델(Victim Safety Model)’에 이론적 근거를 둔다. 해당 모델은 효과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 첫째, 가해자 위험 수준, 둘째, 피해자의 심리적 취약성, 셋째, 환경적 보호요인에 대한 통합적 평가를 강조한다. 이 연구는 판결문을 통해 가해자 위험 요인을, 범죄피해평가 보고서를 통해 피해자의 심리적 상태를 각각 분석함으로써 이 모델의 핵심 요소들을 체계적

로 검토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가해자 혹은 피해자 중 어느 한 쪽의 특성에만 매몰되었던 기존의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 양자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맞춤형 개입 전략의 실천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방 법

연구자료 수집

이 연구는 교제폭력 가해자의 재범 요인과 피해자의 심리·사회적 경험을 다각도로 파악하기 위해 가해자 관련 자료(판결문)와 피해자 관련 자료(범죄피해평가 보고서)를 각각 수집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첫째, 가해자의 범죄 형태와 재범 특성을 확인하고자 2022~2023년 사이 선고된 스토킹처벌법 위반 1심 판결문 580건을 수집하였다. 교제폭력을 별도로 규정한 현행법이 부재하여 스토킹은 교제폭력의 전형적인 양상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판결문 내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어 분석자료로서 적합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 전·현 연인관계임이 명확히 확인된 367건을 채택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전체 판결문에서 초범 가해자는 239명, 폭력 범죄(스토킹 재범 포함) 전력이 있는 재범 가해자는 128명이었으며, 가해자의 인구 및 범죄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둘째, 피해자의 심리·사회적 경험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경찰청의 범죄피해평가 보고서를 활용하였다. 범죄피해평가는 외부 전문가가 피해자와의 면담 및 심리검사를 통해 범죄로 인한 신체적·심리적·경제적·사회적 등의 피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수사 및 제

표 1. 연구자료의 인구·범죄통계학적 특성

구분		빈도/ 평균	비율/ 표준편차
가해자 성별	남성	326명	88.8%
	여성	22명	6%
	확인 불가	19명	5.2%
피해자 나이		41.86세	13.08세
교제 기간		26.35개월	37.50개월
스토킹 기간		2.65개월	2.08개월
형량		14.33개월	29.04개월
집행 유예 유무	집행유예	213명	58%
	해당없음	154명	42%
집행 유예 기간		24.18개월	7.38개월
재범 유무	재범	128명	34.9%
	해당없음	239명	65.1%

판 단계에 제공하는 제도이다. 자료 수집에 앞서 보고서 내 개인정보 식별 요소를 제거하여 비식별화 과정을 거쳤으며, 연구 활용에 대한 피해자의 자필 서면 동의를 득하여 연구 윤리를 준수하였다. 확보된 218건의 보고서 중 전·현 연인관계에 의한 교제폭력 사례 52건을 1차 분류하였고, 이 중 재피해 경험이 구체적으로 구술된 10건의 사례를 심층 분석 자료로 최종 선별하였다. 구체적인 피해자의 일반적 정보와 사건 개요는 표 2와 같다.

연구 도구

교제폭력 가해자 판결문의 범죄통계학적 특성

교제폭력 가해자의 범죄통계학적 특성과 재범 관련 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수집된 판결문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수치화하였다. 분석

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범죄심리학 박사 2인과 교육학 교수 1인이 1심 판결문 367건을 정독하였으며, 가·피해자의 성별, 피해자 연령, 교제 및 스토킹 기간, 선고 형량, 집행유예 유무, 재범 유무를 변수로 추출하여 수치화하였다. 수치화된 자료에 대한 연구기간 교차 검토를 통해 분석 내용이 일치하는지 재검증하였다.

스토킹 위험성 판단 도구

이 연구는 가해자의 스토킹 행위와 위험요인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한국형 위험성 판단 도구 Korea Stalking Assessment Scale (K-SAS)를 활용하였다. K-SAS(이수정 외, 2023)는 본래 가해자 위험 요인, 스토킹 범죄의 특성, 피해자 취약요인의 3개의 상위 구성요인으로 구분되나, 이 연구에서는 자료의 성격을 고려하여 분석 문항을 조정하였다. 첫째, 분석 자료의 한계를 보완하여 객관성을 확보하였다. 예를 들어 판결문상에서 확인이 어려운 피해자 취약 요인 관련 문항은 분석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제외하였으며, 판결문을 통해 명확한 사실 관계 확인이 가능한 가해자 위험 요인과 스토킹 범죄 특성 항목에 집중하여 수치화하였다. 둘째, 수치화 과정의 신뢰도를 제고하였다. 수치화 작업은 범죄심리학 박사 2명과 교육학 교수 1명인 연구진이 독립적으로 실시한 후, 상호 간의 일치도를 확인하는 교차 검증 절차를 거쳤다. 각 문항은 K-SAS의 채점 지침에 따라 2점 척도로 수치화하였으며, 모호한 사례의 경우 연구진 전체 회의를 통해 판단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분석자 간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표 2. 범죄피해평가에 참여한 교제폭력 재피해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사건 개요

연번	피해자 성별	피해자 연령	범죄명	가·피해 자 관계	피해 사건 개요
1	여	30대	폭행· 협박	전 연인	가해자는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손과 발로 머리, 흉부, 둔부를 수차례 폭행하고, “신고하면 너랑 너의 가족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
2	여	60대	특수상해	연인	가해자는 피해자가 당일 일을 나간 것에 기분이 상해 말다툼 중 물건을 부수며 위협하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폭행하여 피해자가 갈비뼈가 부러지는 상해 발생
3	여	20대	스토킹· 명예 훼손	전 연인	가해자는 피해자와 이별 후 본인의 연락을 받아주지 않는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문자·SNS·메일 등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피해자를 비하하는 전단지 250부를 배포
4	여	40대	폭행	연인	가해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대화 중 마찰이 생겨 본인이 사용하는 휴대폰으로 피해자를 폭행
5	여	20대	강간· 촬영	전 연인	가해자와 피해자는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 이후 임신하여 중절수술을 한 경험이 있으며, 피해자가 잠든 사이 본인의 휴대폰으로 나체사진을 촬영
6	여	50대	주거 침입	전 연인	가해자는 피해자와 이별 후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며 연락을 하였고, 연락을 받지 않자 무단으로 피해자의 집을 침입
7	여	30대	촬영· 협박	전 연인	가해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 영상을 촬영 후 피해자가 이별통보를 하자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8	여	30대	스토킹· 촬영	전 연인	가해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으며, 이를 직장 동료에게 유포하였고, 총 4차례 주거침입
9	여	60대	폭행· 스토킹	연인	가해자는 피해자와 말다툼 중 피해자의 손을 쥐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으며, 피해자의 이별통보 이후 지속적으로 스토킹
10	여	50대	강간 치상	전 연인	가해자는 피해자가 본인의 외도를 의심하였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하였으며,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수차례 강간하여 어깨 등 피해자의 근육이 손상되는 상해 발생

위협평가

이 연구는 스토킹 위험성 판단도구로 수집된 기초 자료를 표적 폭력 경고 행동 모델인 Terrorist Radicalization Assessment Protocol (TRAP-18, 위협평가)의 분석 틀에 맞춰 재구성

하였다. TRAP-18(Meloy, et al., 2015)은 ‘경고행동’과 ‘배경특성’으로 구분되나 판결문상 가해자의 배경 정보가 제한적인 점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경고행동 요인에 집중하여 수치화하였다. 구체적으로 각 요인은 판결문에 명시된

구체적 행위의 유무(0/1)를 파악한 후 하위 항목들을 합산하여 연속형 변수로 산출하였다. 예를 들어 계획(pathway) 요인은 미행·감시 동선 파악의 개별 행위의 합(0-3점)으로 계산되었으며, 집착(fixation)은 온·오프라인 연락, SNS정보수집으로 수치화하였다. 표 3에 제시된 평균치(M)은 이러한 합산 점수를 의미한다. 주요 요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주요 요인 중 ‘동일시’의 경우 판결문 및 K-SAS에서 구분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여 제외하였다. ‘새로운 공격성’은 가해자가 계획한 주 표적 외의 대상(동물, 타인 등)에게 직접적인 공격이나 협박을 가한 유무를 수치화하였으며, 판결문에 적시된 실제 공격 행동의 범위를 합산하여 수치화하였다. ‘폭발적 행동’은 가해자의 연락 및 스토킹 행위의 증가, 스토킹 기간 및 범위의 증가로 수치화하였다. ‘유출’은 제3자 연락, 인터넷 유포, 촬영물 이용 협박의 합을 수치화하였으며, ‘최후 수단’은 가해자의 자해, 자살 시도, 자살 암시(문자 등), 절망 발언 유무의 합으로 수치화하였다. ‘직접적 위협’은 피해자 및 관련자 협박과 타해 위협의 합으로 수치화하였으며, ‘가해자 요인’은 물질 사용 유무, 정신건강 문제, 일방적 사고, 반성 여부, 잠정조치 위반의 합을 수치화하였다. 가해자 환경은 반사회적 생활양식, 대인관계 문제, 고용 및 재정 문제 여부의 합을 수치화하였다. 마지막으로 ‘결과’는 신체적 폭력·성폭력·스토킹 행사 여부, 스토킹 지속 여부, 스토킹 점진적 심각성 여부의 합으로 수치화하였다.

판결문 코딩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쳤다. 먼저 연구자 3인이 독립적으로 전체 판결문 367개의 약 20%(n=73)를 무작위 추출하여 TRAP-18 요인을 코딩하였

다. 이후 평가자 간의 일치도는 Cohen's Kappa 계수 .82로 나타나 Landis와 Koch(1977)의 기준에 따라 높은 일치도를 보였다. 불일치 항목(약 10건)에 대해서는 연구진 중 범죄심리학 박사 1인의 중재를 통해 최종 합의를 도출하였으며, 이후 각 연구자가 나머지 판결문(n=294)을 분량을 나누어 코딩하였다.

범죄피해평가 보고서

교제폭력 피해자의 심리·사회적 경험을 확인하기 위해서 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범죄피해평가보고서를 활용하였다. 범죄피해평가는 전문가가 범죄 이후 피해자에게 나타난 5가지 상위 항목을 평가하게 된다. 상위요인은 전문가가 피해자와 면담 후 5가지의 항목에 대해 서술형으로 기술하게 되어 있으며, 이후 하위항목을 1점 척도(예, 아니오)로 확인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첫째, 심리적 피해는 하위요인 없이 상위요인만 존재하며, 범죄 전, 후 피해자의 심리적 변화를 확인하게 된다. 둘째, 신체적 피해의 하위요인은 총 15개로 구분되며, 신체 상해 정도, 후유증, 피해로 인한 일상생활 불편 정도를 평가하게 된다. 셋째, 사회적 피해의 하위요인은 14개로 구분되며, 가족관계의 변화, 업무 및 학업의 변화, 사회 관계망의 변화를 확인하여 평가하게 되고, 넷째, 경제적 피해의 하위요인은 3개로 구분되어 있으며, 범죄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직·간접적 영역으로 구분하여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2차 피해의 하위요인은 15개로 구분되어 있으며 범죄 이후 가해자의 접촉,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 보복 피해 유무를 확인하게 된다. 이 연구에서 피해자의 심리·사회적 경험을 확인하기 위해서 심리적·사회적 상위요인의 서술형 결과를 활용하였다. 이는 하위

요인의 항목으로는 피해 유무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실제 피해자가 경험하는 고통의 강도, 일상회복의 어려움 등 다양한 피해자의 경험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연구방법

교제폭력 가해자의 재범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SPSS 21.0을 사용하였다. 먼저 가해자의 인구·범죄통계학적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를 진행하였고, 이후 재범 유무에 따른 독립표본 t-test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인 재범의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재범 유무를 종속 변인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재범 특성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교제폭력 피해자의 심리·사회적 경험을 확인하기 위해서 반복적 비교분석법을 진행하였다. 반복적 비교분석 방법은 질적연구의 대표적인 연구방법론으로 3단계를 진행하여 연구결과를 도출한다(유기웅 외, 2018). 첫째, 개방 코딩으로 연구자료의 범주를 발견하고 설정하며, 이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주제(피해자의 심리·사회적 피해 경험)와 관련된 내용을 분류하게 된다. 둘째, 범주화 단계로 개방 코딩된 자료를 귀납적 방법을 활용하여 피해자의 진술 중 반복되는 패턴을 찾아 범주를 명목화한다. 마지막 단계는 범주확인 절차로 범주화된 결과가 이 연구의 주제와 부합하는지, 실제 연구자료의 내용이 오염·훼손되지 않았는지, 원자료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로 이뤄진다(박찬홍, 2024).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피해자의 심리·사회적 경험을 범주화한 뒤 범죄심리학 박사 2명, 상담·심리학 교수 1명, 피해자전담 경찰관 3명에게 결과 공유 후 오류 및 보완

사항을 재검토 받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결 과

교제폭력 가해자 재범 요인 분석

교제폭력 재범 가해자와 초범 가해자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인구·범죄통계학적 특성과 위협평가의 요인을 변인으로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범죄통계학적 특성에서는 피해자의 나이와 교제기간이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재범의 경우 피해자의 나이가 더 높은 것($t = -2.09, p < .05$)으로 확인되었고, 교제기간이 더 짧았다($t = 2.05, p < .05$).

위협평가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항목들은 병적 집착을 제외하고 모든 요인이 재범 가해자가 높았다. 범행을 사전에 계획($t = -2.09, p < .05$)하고, 계획과 무관한 공격성을 보이며($t = -5.39, p < .001$), 대상자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있고($t = -5.23, p < .001$), 물질 사용 문제, 정신 건강 문제, 잠정 조치 위반 등 가해자의 요인($t = -6.39, p < .001$)이 높으며, 반사회적 성향, 대인관계 문제와 같은 가해자의 환경($t = -8.60, p < .001$)이 더 부정적이고 결과($t = -4.90, p < .001$)도 재범 가해자가 높았다. 피해자에게 병적으로 집착하는 성향은 초범 가해자가 더 높게 나타났다($t = 2.27, p < .05$).

재범 교제폭력 가해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교제폭력 가해자의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확인하기 위해 재범 유무를 토대로 로

표 3. 교제폭력 가해자의 재범 여부에 따른 범죄통계학적 특성 및 위협평가 요인 차이(N=367)

구분	세부항목	재범(N=128)	초범(N=239)	t
		M(SD)	M(SD)	
범죄통계학적 특성	형량(개월)	16.91(38.56)	12.75(21.16)	-1.22
	집행유예(개월)	25.20(6.06)	23.87(7.73)	-1.11
	가해자 성별	1.04(0.20)	1.07(0.26)	1.19
	피해자 성별	1.96(0.20)	1.92(0.27)	-1.13
	피해자 나이	43.88(11.98)	40.79(13.53)	-2.09*
	교제기간(개월)	19.63(24.95)	30.10(42.55)	2.05*
	스토킹 기간(개월)	2.95(2.33)	2.51(1.92)	-1.81
위협평가 요인	계획	1.50(0.74)	1.31(0.84)	-2.09*
	병적 집착	1.10(0.69)	1.27(0.67)	2.27*
	새로운 공격성	0.75(0.71)	0.38(0.57)	-5.39***
	폭발적 행동	0.27(0.63)	0.23(0.53)	-0.62
	유출	0.36(0.68)	0.39(0.68)	0.41
	최후 수단	0.38(0.73)	0.27(0.65)	-1.43
	직접적 위협	1.10(0.73)	0.68(0.73)	-5.25***
	가해자 요인	1.73(1.04)	0.05(0.92)	-6.39***
	가해자 환경	0.86(0.48)	0.36(0.56)	-8.60***
	결과	1.45(1.05)	0.90(1.00)	-4.90***

주. * $p < .05$, *** $p < .001$

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변인들의 설명력은 19.3% ~ 26.6%로 나타났으며, 모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실제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가해자의 환경(B = 1.35, $p < .001$)과 부정적 결과(B = -0.02, $p < .05$)로 확인되었다. 이는 가해자의 부정적 환경이 1 추가될수록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3.86배 증가함을 시사하며, 부정적 결과가 1 추가 될수록 0.10배로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감소함, 즉 재범확률이 90% 감소하는 것을 의미하는 수치

로 해석된다. 이는 부정적 결과(초기 처벌 수위)이 이후의 재범 가능성을 억제한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교제폭력 피해자의 심리·사회적 피해경험

교제폭력 사건 이후 피해자의 심리·사회적 피해경험을 파악하기 위해 비교반복분석법을 활용하였다. 본래 절차는 개방코딩, 범주화, 범주확인 절차로 이뤄지는데, 개방코딩과 범주화 단계에서 제시된 결과가 최종 분석 단계

<표 4> 교제폭력 가해자의 특성이 재범에 미치는 영향

구분	B	SE	Wald	Exp(B)
피해자 나이	0.02	.01	1.80	1.02
교제기간	-0.01	.00	3.14	0.98
계획	0.01	.21	0.00	1.01
병적 집착	-0.15	.27	0.30	0.85
새로운 공격성	-0.12	.31	0.15	0.88
직접적 위협	0.18	.27	0.47	1.20
피의자 요인	0.29	.18	2.52	1.33
피의자 환경	1.35	.38	12.51	3.86***
결과	-0.02	.17	0.02	0.10*
-2LL			239.53	
Model chi-square			47.42***	
Cox & snell R^2			.193	
Nagelkerke R^2			.266	

주. * $p < .05$, *** $p < .001$

인 범주확인 절차에 다수 포함되기에 최종 결과만 표 5에 제시하였다. 먼저 피해자의 심리적 피해경험은 2개의 상위요인(재피해 경험으로 인한 보복 불안, 재피해로 인한 심리적 변화)과 5개의 하위요인(재피해 걱정, 재피해 불안감 상승, 일상생활 변화, 신체화, 분노)으로 구분되었다. 사회적 피해경험은 2개의 상위요인(관계 문제, 경제·직무 문제)과 6개의 하위요인(대인관계 훼손, 가족구성원 걱정 증가, 가족 간 갈등, 신뢰로운 관계에 대한 부정, 경제적 어려움, 업무 집중 불가)으로 구분되었다. 추가적으로 2차 피해경험의 내용으로 보복 범죄의 유형으로는 3가지(스토킹, 피해자의 관계 단절 시도, 협박)로 확인되었다.

논 의

이 연구는 교제폭력 가해자의 재범 특성을 규명하고, 피해자가 겪는 심리·사회적 경험을 탐색하여, 위험성 평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전략 수립을 위한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초범과 구별되는 재범 가해자의 차별적 특성, 둘째, 표적화된 폭력 및 위협평가 관점에서의 재범 위험성, 셋째, 피해자가 경험하는 심리·사회적 피해 양상과 이에 따른 실무적 함의를 제언한다.

첫째, 재범 가해자 집단의 차별적 특성을

<표 5> 교제폭력 피해자의 심리·사회적 피해 및 2차 피해경험에 대한 범주화

1차 범주	2차 범주	개방 코딩(심리적 피해경험)
	재피해 걱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 이후 또 다시 가해자를 마주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평소 즐겨 하던 산책이나 운동 등 외부 활동의 어려움 <피해자 1> · 외부 발자국 소리를 듣거나, 외출해야 하는 상황이면 집 밖에 가해자가 찾아왔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주위를 두리번거리게 됨. <피해자 2> · 가해자의 일터가 (본인의) 가게와 가까워 혹시 마주치지 않을까 바깥출입을 잘 하지 못하고 있음. <피해자 4> · 회사에 출근하거나 길을 걸을 때 가해자가 나타날까봐 과도하게 주변을 경계하고 작은 자극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크게 놀라며 업무에 집중하지 못함. <피해자 4> · 가해자의 차량과 비슷한 차량을 보면 가해자가 미행을 하는 것일까봐 불안해 운전엔 집중을 못하고 계속해서 해당 차량을 살피다 여러 차례 사고가 날 뻔함. <피해자 6> · 피해자는 가해자가 경찰에 신고 되었다는 것을 알게된 이후 보복을 시도할까봐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음. <피해자 7> · 피해자의 모는 가해자가 집으로 찾아와 해코지를 할까봐 두려워 집의 복도 쪽 창문을 막아 놓는 등 불안을 호소함. <피해자 8> · 가해자가 딸과 동생의 주소를 알고 있어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큼. <피해자 9>
	재피해 경험으로 인한 보복 불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 후에도 가해자가 직장으로 찾아올 것 같아 불안함. <피해자 1> · 가해자가 찾아와 욕하며 다시 폭력을 휘두를지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 <피해자 2> · 가해자가 피해자 주거지 인근에 피해자를 비하하는 전단지를 퍼뜨린 적이 있어 새벽 시간대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주거지 인근의 우편함들을 살펴보기도 함. <피해자 3> · 가해자가 다시 찾아와 해코지를 할까봐 경찰의 지원을 통해 설치한 CCTV를 수시로 확인함. <피해자 6>
	재피해 불안감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해자에게 큰 배신감을 느껴 대인관계에서도 타인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도를 의심하게 됨. <피해자 5> · 이전에 가해자가 피해자의 직장까지 찾아왔던 적이 있어 퇴근 후 집에 갈 때도 주차장에 가해자의 차가 있는지 확인한 후 일부러 먼 길로 돌아서 귀가하는 등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음. <피해자 7> · 네 차례의 주거침입이 발생하였던 기존 주거지 근처에만 가도 심장이 빨리 뛰고 혹시나 가해자의 차가 있나 과도하게 주변을 경계하는 등 높은 불안 증상을 경험함. <피해자 8> · 가해자의 협박과 사건 발생으로 인해 장소에 대한 불안으로 이사를 고민하는 상황임. <피해자 10>
재피해로 인한 심리적 변화	일상생활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루 중에도 여러 번 갑작스레 불안감을 느끼거나 멍해지는 등의 상태를 (이전과 달리) 경험하며, 취업 준비와 같이 면밀한 주의를 요구하는 과업을 수행하지 못하고 하루 중 대부분을 무기력한 상태로 보냄. <피해자 1> · 사건 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과민하고 불안정한 정서로 인해 평온하게 일상을 보내지 못하고 휴식 또한 하지 못함. <피해자 1> · 과도하게 주변을 경계하게 되는 행동으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보임. <피해자 3> · 집 앞에서 방향과 층수가 기억나지 않는 등 일상생활 중 갑작스럽게 기억능력 저하가 반복되면서 직장생활 및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음. <피해자 9>

<표 5> 교제폭력 피해자의 심리·사회적 피해 및 2차 피해경험에 대한 범주화

(계속 1)

1차 범주	2차 범주	개방 코딩(심리적 피해경험)
재피해로 인한 심리적 변화	신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는 발자국 소리에도 가슴이 두근 거리는 신체적 증상을 경험함. <피해자 2> · 극심한 불안으로 인해 치과치료 시 천으로 눈만 가려져도 숨이 쉬어지지 않음. <피해자 4> · 스트레스로 인해 이석증 증상이 나타나 어지럼증이 심한 날에는 업무를 하지 못함. <피해자 4> · 높은 불안과 우울로 수시로 눈물이 나거나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어깨 결림과 두통, 소화불량 등의 신체 증상을 경험하고 있는 상태임. <피해자 7> · 수면의 어려움으로 인해 하루에 1-3시간 밖에 자지 못하는 상태로 식사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여 소화가 되지 않아 사건 이후 현재까지 13-15kg 감소함. <피해자 8> · 가슴이 타들어가는 통증과 스트레스에 기반한 구토, 호흡 곤란 등의 신체 증상이 있음. <피해자 9> · 눈이 항상 불편하며 10분만 누워도 머리 통증으로 괴로움. <피해자 10>
	분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의 연인이 자신을 위협하는 상황이 여러 번 반복된다고 느끼면서 배신감, 패щем 등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고 있음. <피해자 2> · 가해자에게 큰 배신감을 느꼈고, 본인이 성폭력 피해자 임에도 직장 내에서 부정적인 소문이 퍼져 억울한 상황임. <피해자 5> · 피해자는 잠을 자기 위해 누우면 가해자가 폭행 이후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한 점이 떠올라 반복적으로 분노와 억울함을 경험함. <피해자 10>
관계 문제	대인관계 훼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 여러 곳에 멍이 들어 사건과 관련 없는 타인에게 피해 상황이 노출되었고, 사건을 설명해야 되는 불편감을 경험함. <피해자 1> · 학교 및 주거지 인근에 피해자의 신상을 유포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지들 다량으로 배포해 학업과 진로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대인관계가 훼손됨. <피해자 3> · 학우들 사이에서 좋지 않은 소문이 퍼지며, 교내 커뮤니티 사이트에 전단지 내용이 확산되어 피해자가 동아리를 그만두었으며, 연구실 출근을 하지 못하는 상황임. <피해자 3> · 직장 내 사람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소문이 퍼져 현재 주거지 내 직장 동료들이 마주칠까 걱정되어 밖에 못나가는 상황임. <피해자 5> · 동창들로부터 가해자의 탄원서 및 합의서 요청, 다시 만나달라는 연락을 받음. <피해자 6> · 사건 이후 다른 사람들을 믿지 못하겠다고 호소하며 평소 어울리던 친구들과의 만남에도 참석하지 않는 등 타인에 대한 불신과 고립감을 경험함. <피해자 7> · 가해자가 피해자의 친구들의 sns를 팔로우 및 피해자와 함께 찍은 사진에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달고 있어 친구들에게 피해 사실이 알려질까 걱정되는 상황임. <피해자 7> · 현재 같이 작업하는 직장 동료가 가해자로부터 사진을 유포 받은 사람이라 일터에서 높은 심리적 불편감을 경험하고 있음. <피해자 8>
	대인관계 훼손	

<표 5> 교제폭력 피해자의 심리·사회적 피해 및 2차 피해경험에 대한 범주화 (계속 2)

1차 범주	2차 범주	개방 코딩(사회적 피해경험)
관계 문제	가족구성원 걱정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이 사건에 대해 알게 되어 피해자의 생활 전반을 염려하는 것 같음. <피해자 1> ·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게 및 주거지를 알고 있어 본인의 자녀들에게 찾아와 해코지를 할 까봐 가족 불안감이 증가한 상태임. <피해자 4> · 피해자의 자녀는 피해 사실을 인지한 후 혼자 살고 있는 피해자가 걱정되어 아침, 저녁으로 피해자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영상통화를 하는 등 불안해함. <피해자 6>
	가족 간 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의 가족은 피해자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밖에서 그러고 다니느냐.” 등의 질책을 하여, 가족 내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임. <피해자 5> · 심리적 어려움으로 인해 사소한 일에도 자녀들에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모습이 나타나 죄책감을 느끼며 스트레스가 가중됨. <피해자 7>
	신뢰로운 관계에 대한 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 이후 사람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여 향후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지장이 있을 것 같으며, 주도적으로 사회적 활동을 하지 못하겠음. <피해자 1> · 가해자에게 큰 배신감을 느껴 대인관계에서도 타인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도를 의심하게 됨. <피해자 5> · 사건 이후 타인에 대한 불신과 카메라나 휴대폰을 들고 있는 사람을 보면 본 사건이 떠올라 정서적 고통을 호소하는 등 일상생활 전반에 어려움을 경험함. <피해자 7> · 타인에 대한 신뢰가 크게 저하됨. <피해자 10>
경제·직무 문제	경제적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는 신체 상해로 인해 근로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음. <피해자 2> · 직장내 부정적인 소문으로 인해 현재 퇴사한 상황임. <피해자 5> · 피해자는 본인의 상황을 가족에게 알리기 원치 않아 아무에게도 말을 안했으나, 변호사 선임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남동생에게만 피해 사실을 털어놓음. <피해자 7> · 경제적 어려움으로 친오빠들에게 변호사 비용 요청을 위해 범죄 사실을 알렸을 뿐 다른 가족에게는 사건을 알리지 않음. <피해자 10>
	업무 집중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 이후 불안과 우울로 인해 집중하는 것이 어려우며, 동료들로부터 “왜 이렇게 집중을 못 하느냐?”라는 피드백을 받음. <피해자 7> · 피해자는 사건 이후 높은 불안과 우울, 스트레스로 일상 및 업무 중 집중이 잘되지 않음. <피해자 8> · 가해자가 직장 업무시간에도 연락을 받으라고 지속적으로 강요하여 핸드폰 사용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음. <피해자 9> · 피해자는 사건 이후 직장에 있을 때가 집에 있을 때보다 마음이 편하여 꾸준히 직장에 나가고 있지만, 업무 중 갑작스럽게 사건이 떠오르는 등 업무에 집중하는 것이 어려움. <피해자 6>
1차 범주	2차 범주	개방 코딩(2차 피해경험)
가해자의 보복 유형	스토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을 신고한 이후 가해자로부터 약 60건의 문자를 받아 차단하였으나, 다른 연락처로 가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을 받음. <피해자 1> · 가해자가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왔었으며,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하하라는 등의 연락을 취함. <피해자 2> · 피해자는 가해자와 연락 및 접촉을 거절하고 차단하였음에도 가해자는 SNS계정을 새로 만들어 연락하거나, 인근 공공전화로 전화를 걸어 음성을 남기는 등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함. <피해자 3>

<표 5> 교제폭력 피해자의 심리·사회적 피해 및 2차 피해경험에 대한 범주화

(계속 3)

1차 범주	2차 범주	개방 코딩(2차 피해경험)
	스토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신고 이후에도 가해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재결합을 요구하며 찾아오고 있는 상황임. <피해자 4> · 가해자는 이전에도 보복을 암시하듯이 말한 적도 있고 실제로 스토킹이나 주거침입을 시도한 적이 있음. <피해자 8> · 평소에도 피해자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폭력적인 언행을 보였으며 현재까지 매일 수십회씩 연락을 하는 등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음. <피해자 9> · 피해자 고소 이후에도 가해자가 수시로 연락하고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는 등 위협적 행동을 반복함. <피해자 10>
	피해자의 관계 단절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해자는 피해자의 부모, 대학 교수에게도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피해자의 모욕적인 발언을 지속적으로 함. <피해자 3> · 가해자가 주변 지인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려 피해자가 잘못된 것처럼 인식되고 있어 이웃 관계에도 어려움이 있음. <피해자 4> · 가해자는 동창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과 사실과 다른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를 함. <피해자 6> ·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 퍼트린 거짓 소문 때문에 평소 친하게 지냈던 업계 동료들과 친구들과의 관계도 회피하고 있음. <피해자 8>
가해자의 보복 유형	협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한 것의 몇 배로 갚아주겠다. 고소를 취하해라 등의 협박을 받음. <피해자 1> · 가해자는 과거에도 전 연인에게 유사한 사건으로 법적 다툼을 하여 벌금형만 받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며, 피해자의 신고가 효력이 없음을 암시하게 하였으며, 새로운 방법으로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함. <피해자 3> · 직접적으로 연락하거나, 지인들을 통해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고, 본인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고소하겠다고 협박함. <피해자 4> · 소송을 하겠다. 부모에게 알리겠다. 지역사회에서 살지 못하게 하겠다. 등 지속적으로 협박함. <피해자 5> · 최근에 가해자는 친구들에게 임시조치가 끝난 이후에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하고 다니는 상황임. <피해자 6> · 가족에게 본 상황을 알리지 않으려고 하는데, 가해자가 가족에게 사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상황임. <피해자 7> · 가해자는 보복 살인사건을 이야기하며 사람을 해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고, 이별을 통보하자 ‘두고 보자.’와 같이 협박함. <피해자 9> · 가해자는 피해자가 신고한 사실을 알고 “칼로 (너의) 배를 찔러 죽이고 감옥 간다.”고 협박함. <피해자 10>

살펴본 결과, 초범 집단보다 피해자의 연령이 높고, 교제 기간은 짧은 특징이 나타났다. 위협평가 요인에서는 계획, 새로운 공격성, 직접적 위협 항목에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가해자의 요인 및 환경 그리고 부정적

결과에서도 재범 집단이 더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교제폭력이 단순한 관계 갈등의 연장선을 넘어 가해자의 위협성과 재범 가능성이 특정 조건에서 더욱 강화된 형태로 발현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가해자 및 피해자의 연령과 관련하여, 40대 이상의 남성이 위험성이 높고(Oram et al., 2013; Sabri et al., 2016), 피해자의 평균 연령대가 44.2세로 조사된(Leth, 2009) 선행연구 결과는 이 연구의 경향성과 유사하다. 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교제폭력의 위험성이 동반 상승할 수 있다는 기존의 연구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Aldridge & Browne, 2003). 특히 교제기간의 경우, 기간이 길수록 언어 폭력의 비중이 높은 반면, 기간이 짧을수록 강력범죄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선행연구(김성희, 2021)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교제 기간이 짧은 관계일수록 재범이 빈번하고, 실제적인 부정적 결과(물리적 폭행 등)로 이어진 양상은 중요한 실무적 함의를 갖는다. 언론에서는 2030 세대의 교제폭력을 조명하지만, 실제로 교제폭력은 전 연령대에서 범죄가 발생하며 선행연구(김성희, 2021)에서 연령이 높고 만남의 기간이 짧을수록 살인 등 극단적인 강력범죄로 종결될 위험이 크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연구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기제들로 해석될 수 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회적 네트워크는 축소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때 짧은 기간 내 형성된 강한 정서적 애착이 가해자의 삶에서 과도한 비중을 차지하게 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가 관계 통제에 실패할 경우, 이를 단순한 결별이 아닌 자기정체성에 대한 위협 또는 삶의 붕괴로 인식하여 극단적 행동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 즉, 연령과 교제 기간은 단순한 배경 변수를 넘어 관계 통제 욕구와 결합하여 재범 위험의 강도를 조절하는 주요 변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주목할 점은 병적 집착 요인이 다른 위협평가 요인들과 달리 초범 가해자에게서

더 높았다는 것이다. 이는 Holtzworth-Munroe와 Stuart(1994)의 가해자 유형 분류를 뒷받침하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계선적(borderline/ dysphoric) 유형’의 가해자는 관계 상실에 대한 극심한 불안과 집착을 보이며 친밀한 관계 내에서 폭력을 행사하지만, 상대적으로 재범률은 낮다. 반면, ‘반사회적(generally violent/ antisocial) 유형’은 집착보다는 통제 욕구와 도구적 공격성이 두드러지며, 폭력이 관계 외부로도 확장되는 경향이 있고 재범률 또한 높다. 즉, 초범 가해자의 경우 관계 종료를 심리적으로 수용하지 못해 마지막 수단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패턴일 가능성이 크다. 반면, 재범 가해자는 피해자를 통제하기 위한 도구로 폭력을 활용하며, 집착보다는 계획성과 환경적 위험요인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 특성을 보인다. 즉, 위협평가 실무에서 집착의 유무를 재범 위험의 자동적 지표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표적화된 폭력 및 위협평가 관점에서 볼 때, 재범 집단은 병적 집착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계획’ 요인은 재범과 강하게 결부되는 양상을 보였는데, 이는 우발적 폭력이 대체로 단발성에 그치는 반면 계획된 범행은 반복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았다는 선행연구(권준성, 한민경, 2025)의 결과와 유사하다. 이 연구에서도 가해자가 피해자를 미행·감시하고 동선을 파악하는 등의 구체적 행동이 확인되었다. 교제폭력의 상당 부분이 우발적 감정 폭발보다는 사전에 준비된 실행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새로운 공격성’은 재범 위험을 가시화하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 연구에서 재범 가해자들은 피해자 외 타인을 폭행하거나 반려견을 학대하는 등 공격성을 확장하여 표출

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특성은 예측 불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위험관리 관점상 특히 중요하다. 이는 타인에 대한 공격성과 친밀한 관계 내 폭력 사이의 연관성을 제시한 선행연구(안귀여루, 2002) 결과와 궤를 같이한다. 실제로 데이트폭력 가해자들이 어려서부터 분노조절의 어려움을 겪었고, 연인을 비롯해 타인을 폭행한 경험도 언급한 선행연구도 있었다(박경은, 2023). 직접적 위협 역시 물리적 폭력의 전조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위협과 협박이 반복될수록 실제 신체적 폭행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으며(Warren & Mullen, 2011), 이는 위험성 판단의 중요한 변수라는 Rosenfeld와 Harmon (2002)의 보고와 유사하다. 즉, 교제폭력 실무 현장에서 경고 신호를 포착하고 선별하는 것이 재범 및 강력범죄 예방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가해자 요인 및 환경에 대한 분석 결과, 개인의 심리·행동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특성이 결합할 때 재범 위험이 증폭되는 구조임이 확인되었다. 이 연구에서 재범 집단은 초범 집단에 비해 물질 사용, 정신건강 문제, 일방적 사고 및 반성 없는 태도, 잠정조치 위반이 가해자 요인 중 유의하게 높은 수치를 보였다. 또한 반사회적 성향, 대인관계 문제, 고용 및 재정적 불안정으로 구성된 가해자 환경적 요인 역시 재범 집단에서 더 두드러졌다. 이러한 결과는 부정적 성격특성과 환경적 결핍이 재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범죄학 분야의 여러 선행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한다(김지연 외, 2024; 김태식, 2025; 박성수, 2010; 손현중, 2022; 유숙경, 김영은, 2023; 윤정아 외, 2024; 이미정, 2013; 정지숙 외, 2009). 결론적으로 교제폭력의 재범 위험은 관계의 특수성만으로 설명되지 않으며, 개인적 취약성

과 환경적 위험 요인이 상호작용할 때 더욱 가속화된다. 따라서 실무 현장에서는 연령·교제 기간과 같은 교제폭력의 관계 변수뿐만 아니라 계획성, 피해자 외 폭력, 잠정조치 위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통합적 위험평가 체계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심리적 경험과 안전 욕구, 개입 지연의 양상은 교제폭력 특유의 관계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이 연구의 피해자들은 모두 재피해를 경험한 여성들로 보복에 대한 우려로 인한 불안이 높았다. 특히 피해자들은 스트레스와 우울이 심화됨에 따라 피해의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는 부정적 귀인과 자기비난을 반복하는 경향을 보였다(황성원 외, 2020). 이러한 심리적 특성은 사건 원인을 자의적으로 탐색하는 과정(Weiner, 1985)과 결합하여, 공권력에 대한 신고를 주저하거나 신고 후에도 처벌불원을 선택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방보경, 노연경, 2024). 결과적으로 이러한 내적 기제는 외부의 도움 요청을 지연시키며, 결국 재피해가 누적되어 상황이 통제 불가능한 지점에 이르러서야 외부 개입이 시작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전현진, 2025년 8월 11일).

이 결과는 실존적 안전(실체적 보호)이 확보되었는지에 따라 교제폭력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 경험과 진술의 양상이 결정된다는 것을 뜻한다. 즉,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의 호소는 보복 위협, 일상 붕괴, 신체화 증상, 자기 분노와 같은 생존 중심의 내용으로 수렴될 가능성이 크다.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의 안전 확보가 심리적 회복을 위한 필수 전제조건이라는 것이다.

피해자의 보호 요인과 관련하여, 자존감(자공심)이 높을수록 폭력 상황에 적응적으로 대

처하며(O'Keefe, 1998) 법·제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외부 도움 요청을 촉진한다는 점(심해인, 하상근, 2024)에 주목해야 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실무에서는 피해자의 개인적 특성(폭력 허용도, 법·규칙에 대한 비적극성 등)으로 인해 신고 이후에도 사건을 축소하거나 처벌불원할 수 있음을 전제해야 한다. 따라서 처벌 의사만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신변 보호 중심의 개입과 설득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는 피해자의 의사 존중과 객관적 안전 확보의 균형이 필요한 영역이다. 실무자는 피해자의 주관적 진술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이 연구에서 도출된 위험신호(직접적 위협, 새로운 공격성, 잠정조치 위반 등)를 근거로 보호조치의 필요성을 전문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즉, 피해자가 처한 위험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도록 조력하여 현실적인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개입이 요구된다.

피해자의 사회적 피해경험을 분석한 결과, 대인관계의 훼손뿐만 아니라 경제·직무(학업)상의 문제가 동반되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사회적 지지망을 단절시켜 추가 가해를 수행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는 과정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일상활동이론(Cohen & Felson, 1979)에 따르면, 보호자가 부재하거나, 보호 체계가 붕괴된 상황에서 범죄 발생 가능성은 극대화된다. 이 연구의 피해자들은 대인관계가 단절되어 외부 도움 요청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가족 간 갈등이 있거나 타인과 새로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중첩된 위기에 처해 있었다. 즉, 교제폭력 피해자 지원이 단발성 보호조치로 그쳐서는 안 되며, 사회적 지지망 재건과 일상 기능 회복(관계·직무·경제)까지 포괄하는 장기적이고 다각적인 개입 체계로 확장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제폭력 재범 가해자를 특성을 초범 집단과 비교하여 연령·교제기간·위협평가 요인·가해자 특성 및 환경·부정적 결과를 종합적으로 규명하였다. 둘째, 표적화된 폭력 및 위협평가의 경고 행동 틀을 교제폭력 맥락에 적용함으로써, 일반적 갈등을 넘어 강력범죄로 이행될 위험을 구조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실무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셋째, 피해자 경험을 단순한 심리적 반응을 넘어 사회적 영역(관계·직무·경제)으로 확장하여 함께 논의함으로써, 실무적 개입의 목표가 단기 보호를 넘어 전인적 회복과 일상 기능 재건으로 확장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의 실천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제기간이 짧고 피해자 연령이 상대적으로 높은 관계에서, 계획·새로운 공격성·직접적 위협이 확인되거나 잠정조치 위반 등의 가해자 요인이 동반될 경우, 재범 및 강력범죄 위험이 높다. 따라서 수사·보호 실무에서는 이를 고위험군 선별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피해자가 처벌불원이나 사건 축소를 선택하더라도 객관적 위험신호가 뚜렷하다면 신변 보호·접근금지 등 안전 중심 조치를 우선으로 시행해야 한다. 더불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전문 지원체제로 연계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교제폭력 재범 특성과 피해자 경험을 통합적으로 논의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한이 따른다. 첫째, 판결문 및 범죄피해평가 보고서라는 자료의 특성상, 개별 사건에 내재된 세부적인 맥락과 역동을 완벽하게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둘째, 피해자 경험은 사건의 심각도나 관계의 특성, 지원체계에 대한 접근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를 일반화하는 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 셋째, 위협평가 요인을 교제폭력 맥락에 적용하는 시도는 실무적으로 유용하나, 계획성과 충동성의 공존과 같은 요인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정교하게 분리하기에는 정량적 한계가 존재한다. 이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고 일반화할 때는 이러한 변수들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범 위협 요인들이 시간의 흐름이나 특정 기점(이별 통보, 잠정조치 결정 등)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강화되는지에 대한 과정 중심의 분석이 요구된다. 둘째, 피해자 심리·사회적 경험을 실제적인 안전 확보 여부와 연동하여 세분화하고, 이것이 처벌불원 결정에 미치는 기제를 정밀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 연구에서 활용한 위협평가 요인을 수사 및 피해자 보호 실무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형태로 표준화하고, 위협신호에 따른 개입 과정(신변 보호 - 설득 - 연계)의 실질적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 넷째, 재피해 횟수와 양상에 따른 심리적 외상의 깊이와 회복 궤적을 추적하는 종단적 연구를 통해 피해자 특성별 맞춤형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후속 연구들은 교제폭력의 강력범죄화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회복을 돕는 근거 기반의 개입 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소영 (2025). 교제폭력 판결문에 관한 실증적 분석: 범죄특성과 입법적 논의. *피해자학연구*, 33(2), 1-31.

권준성, 한민경 (2025). 친밀한 파트너 폭력의 반복발생 패턴: 반복사건 생존분석. *형사정책*, 35(4), 195-235.

경찰청 (2025). “교제폭력 피해자 ‘어떻게’, ‘더’ 안전하게 보호할 것인가?: 쟁점과 과제. 국제 세미나 발표자료.

국민참여입법센터 (2025). *국회입법현황*. (2026. 1. 20. 인출)

김성령, 이예솔, 박효정, 배재익, 조훈식 (2025). 교제폭력 집행유예 선고 판결문 분석: 피해자 보호와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피해자학연구*, 33(2), 91-122.

김성연 (2018). 범죄피해와 범죄의 두려움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범죄학*, 12(1), 55-80.

김성희 (2021). *친밀한 파트너 살인의 특성에 관한 연구: 스토킹 행위 유무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지연, 윤가영, 조병철 (2024). 국내 교정시설의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유형별 특성 분석. *경찰학연구*, 24(4), 33-69.

김태식 (2025). 수용자 재범과정에서의 심리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교정상담학연구*, 10(1), 81-102.

김한균 (2023). ‘교제폭력’의 범죄 명명과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법제화. *형사정책*, 35(2), 81-103.

김효정 (2024). 젠더기반폭력으로서 친밀 관계폭력의 개념에 대한 고찰과 향후 과제. *이화젠더법학*, 16(1), 125-166.

김효정, 유화정 (2024). 강제된 동의, 강요된 관계: 교제폭력 피해자의 경험을 통해 본 강압적 통제의 메커니즘과 자유 탈환을 위한 여성 행위성. *여성학논집*, 41(1), 69-105.

박경은 (2023). 성인 초기 남성의 데이트폭력 가해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

- 회지: 여성, 23(2), 233-254.
- 박남준의원 대표발의안 (2016).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의안번호: 1918581.
- 박성수 (2010). 마약류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요인에 관한 연구: 위험성·육구 요인 도출을 통한 효과적 사회처우 방안모색을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논집, 7(2), 211- 232.
- 박언주 (2010). 아내폭력 피해여성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연구. 여성학 논집, 27(2), 193-224.
- 박종철, 윤철희 (2025).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의 실효적 방안에 대한 질적 연구-경찰의 단계별 대응을 중심으로-. 한국민간경비학회보, 24(2), 79-108.
- 박찬홍 (2024). 반복적 비교분석법을 활용한 대학생의 말하기에 대한 인식 분석: 전북 지역 J대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청람어문교육, 97, 159-183.
- 방보경, 노연경 (2024). [사회_교제폭력 판례 100건 분석] “그래도 한때 연인 사이인데” 피해자 60%는 처벌 불원. ANDA, 96-97.
- 법무부 (2025). 2024 범죄백서. 진천: 법무연수원.
- 성평등가족부 (2025). 2025 여성폭력통계. 서울: 성평등가족부.
- 손현중 (2022).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요인에 관한 연구: 판결문 분석 중심으로. 치안정책연구, 36(3), 319-348.
- 신소영, 광형곤 (2024).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민간 협력과 예방적 접근: 민간 경호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시큐리티연구, (81), 43-66.
- 신지연, 최수미 (2017). 거부민감성, 비대칭 패러다임이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공격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2(4), 533-549.
- 심혜인, 하상군 (2024). 친밀한 관계 폭력 피해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분석. 한국범죄심리연구, 20(4), 143-160.
- 안귀여루 (2002). 폭력 남편의 심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7(1), 5-28.
- 연합뉴스 (2025년 8월 11일). “여자친구가 날 무시해서”...대전 교제살인 피의자는 26세 장재원. <https://youtu.be/xTuDBEuPMGY> (2026. 1. 13. 인출)
- 온라인 중앙일보 (2014년 5월 22일). 대구 중년부부 피살사건, 딸 남친이 저질러...CCTV속 모습 보니 ‘충격’.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14753373> (2026. 1. 20. 인출)
- 우현진, 장숙희, 권호인 (2017). 데이트폭력 피해여성의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2(3), 315-335.
- 유기웅, 정종원, 김영석, 김한별 (2018).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서울: 박영스토리.
- 유숙경, 김영은 (2023). 교정시설 남성 성범죄자의 대인관계 증진과 가족 관계 회복을 위한 변증법적 행동치료(DBT)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부부가족상담연구, 4(1), 45-66.
- 윤정아, 홍동규, 성현준 (2024). 판결문을 활용한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자의 재범 특성과 위험 요인 분석. 안전문화연구, 39, 161-174.
- 이수정, 강지은, 이해지, 홍정윤, 김승혜, 박지혜, 배민경, 민설희, 한준희, 권유빈, 강보정, 김소연 (2023). 스토킹 고위험군 식별을 위한 범죄심리학적 판단 지표 개발. 서울: 법무부.
- 이무선 (2024). 범죄피해자 심리지원의 실태 및 개선방안. 한국범죄심리연구, 20(2), 59-72.
- 이미정 (2013). 범죄예방 거버넌스의 새로운 실현 방안. 형사정책연구, 2013(6), 213- 235.

- 이인선의원 대표발의안 (2025).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의안번호: 2213638
- 이주빈, 오세진 (2023년 5월 29일) ‘데이트 폭력’ 대신 ‘교제폭력’이라 쓰겠습니다.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93724.html> (2026. 1. 20. 인출)
- 입법조사처 (2024). 여성 5대 폭력피해자 통합 지원사업 운영과 과제: 복합·다변화하는 여성 폭력 피해자 중심의 통합지원 필요.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 장미혜, 김효정, 박상민, 유경희, 이다은, 정다은, 정연주, 정지연 (2021). 2021년 여성폭력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 전현진 (2025년 8월 11일). 교제폭력, 극한 상황서 나온 ‘처벌 원치 않는다’는 말...“피해자 설득해 보호해야”.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508111621011#ENT> (2026. 1. 20. 인출)
- 정지숙, 조성화, 최지명 (2009). 정신감정이 의뢰된 성범죄자들의 MMPI-2 하위 유형에 따른 심리적 특성.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8(4), 1049-1068.
- 정희진 (2016). 아주 친밀한 폭력, 여성주의와 가정폭력. 서울: 교양인.
- 주재영 (2025). 교제폭력 입법 추진과 관계성 범죄피해자 보호조치 강화방안: 법 집행 현장 및 절차를 중심으로. *범죄수사학연구*, 11(2), 69-92.
- 표창원의원 대표발의안 (2017). 데이트폭력 등 관계 집착 폭력행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 2008429
- 박고은, 이승욱 (2025년 6월 22일). 신고 9번 했는데 살해당했다...동탄 납치·살인 사건 전말.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04053.html (2026. 1. 13. 인출)
- 한겨레 (2025). 신고 9번 했는데 살해당했다... 동탄 납치·살인 사건 전말. (2026. 1. 13. 인출)
- 한예담, 조은경 (2025). 교제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성별과 양가적 성차별주의가 범죄 심각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강압적 통제’ 도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27(3), 61-86.
- 현예슬 (2025년 12월 19일).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장형준 징역 22년 선고. “재범 위험 높다.”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1332> (2026. 1. 13. 인출)
- 홍동규, 성현준, 조은경 (2025). 위협평가를 통한 표적화된 폭력의 예방적 개입방안 연구. *안전문화연구*, 45, 311-329.
- KBS (1990). 토막살인사건 발생.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3699494> (2026. 1. 20. 인출)
- KBS (2026). 새해부터 또 교제 살인...‘나이 불문’ 잇다라.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450851> (2026. 1. 13. 인출)
- RISS (2025). 검색어 “교제폭력”, “피해자” (2026. 1. 16. 인출)
- Aidridge, M. L. & Browne, K. D. (2003). Perpetrators of Spousal Homicide, A Review. *Trauma, Violence & Abuse*, 4(3), 265-276.
<https://doi.org/10.1177/1524838003004003005>
- Boccardo, S., Wagels, L., Henn, A. T., Hupen, P., Graben, L., Neuner, I., & Raine, A. (2021). Proactive vs reactive aggression within two modified

- versions of the Taylor aggression paradigm. *Frontiers in Behavioral Neuroscience*, 15, 1-15.
<https://doi.org/10.3389/fnbeh.2021.749041>
- Brawn, K. D., & Herbert, M. (2007). *Crime victims: An introduction to victimology*. Cengage Learning.
- Cohen, A. E., & Felson, M. (1979). Social change and crime rate trends: a routine activity approac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4, 588-608.
<https://doi.org/10.2307/2094589>
- Fernandez-Antelo, I., Cuadrado-Gordillo, I., & Martin-More P. D. (2020). Synergy between acceptance of violence and sexist attitudes as a dating violence risk factor.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7(14), 5209.
<https://doi.org/10.3390/ijerph17145209>
- Fugate, M., Landis, L., Riodan, K., Naureckas, S., & Engel, B. (2005). Barriers to domestic violence help seeking. *Violence Against Women*, 11(3), 290-310.
<https://doi.org/10.1177/1077801204271959>
- Gibson, K. (2023). Pathway to Targeted Violence: Can Early Intervention Work? Department of Justice. *Journal of Federal Law and Practice*, 71(2), 39-46.
<https://racism.org/articles/worldwide/war-on-terrorism/11498-pathway-to>
- Gill, P., Silver, J., Horgan, J., & Corner, E. (2017). Shooting alone: The pre-attack experiences and behaviors of US solo mass murders. *Journal of Forensic Sciences*, 62(3), 710-714.
<https://doi.org/10.1111/1556-4029.13330>
- Han, L., Li, W., Wang, X., Xu, Y., & Zhao, J. (2024). Social comparison and aggression: The mediating role of covert narcissism.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27(3), 1-11.
<https://doi.org/10.1002/ijop.13129>
- Landis, J. R., & Koch, G. G. (1977). The measurement of observer agreement for categorical data. *Biometrics*, 33(1), 159-174.
<https://doi.org/10.2307/2529310>
- James, C., & Fiona, L. (2008). Fair Labelling in Criminal Law. *The Modern Law Review*, 71(2), 217-246.
<https://doi.org/10.1111/j.1468-2230.2008.00689.x>
- Leth, P. M. (2009). Intimate partner homicide. *Forensic Science, Medicine, and Pathology*, 5(3), 199-203.
<https://doi.org/10.1007/s12024-009-9097-5>
- O'keffe, M. (1998). Factors mediating the link between witnessing interpersonal violence and dating violence. *Journal of Family Violence*, 13(1), 39-57.
<https://www.ojp.gov/ncjrs/virtual-library/abstracts/factors-mediating-link-between-witnessing-interparental-violence>
- Meloy, J., & O'Toole, M. E., (2011). The concept of leakage in threat assessment. *Behavioral Science and the Law*, 29(4), 513-527.
<https://doi.org/10.1002/bsl.986>
- Meloy, J., Mohandie, K., Knoll, J. L., & Hoffmann, J. (2015). The Concept of Identification in Threat Assessment. *Behavioral Sciences and the Law*, 33(2-3), 213-237.
<https://doi.org/10.1002/bsl.2166>
- Meloy, J., & Rahman, T. (2021). Cognitive-affective drivers of fixation in threat assessment. *Behavioral Sciences & the Law*, 39(2), 170-189.
<https://doi.org/10.1002/bsl.2486>
- Oram, S., Flynn, S. M., Shaw, J., Appleby, L., &

- Howard, L. M. (2013). Mental illness and Domestic Homicide: A Population-Based Descriptive Study. *Psychiatric Services*, 64(10), 1006-1011.
<https://doi.org/10.1176/appi.ps.201200484>
- Palmer, L. (2012). *The PTSD work-book for teens: simple, effective skills for healing trauma*. Dokland, CA: New Harbinger Publications.
- Rosenfeld, B., & Harmon, R. (2002). Factors associated with violence in stalking and obsessional harassment cases.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29(6), 671-691.
<https://doi.org/10.1177/009385402237998>
- Sabri, B., Campbell, J. C., & Dabby, F. C. (2016). Gender Differences in intimate Partner Homicides Among Ethnic Sub-Groups of Asians. *Violence Against Women*, 22(4), 432-453.
<https://doi.org/10.1177/1077801215604743>
- Warren, L. J., & Mullen, P. E. (2011). A clinical study of those who utter threats to kill. *Behavioral Sciences and the Law*, 29, 141-154.
<https://doi.org/10.1002/bsl.974>
- Weiner, B. (1985). An attributional theory of achievement motivation and emotion. *Psychological Review*, 92(4), 548-573.
<https://doi.org/10.1037/0033-295X.92.4.548>

1차원고접수 : 2026. 02. 06.

심사통과접수 : 2026. 03. 12.

최종원고접수 : 2026. 03. 30.

Psychosocial Experiences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Victims Based on Offender Characteristics and Recidivism Risk Factors: Using Court Decisions and Crime Victim Impact Assessments

Hyun Jun Sung NaKyung Seong Ji Hae Lee
Chungbuk Provincial Office Inhun Middle School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recidivist offenders in intimate partner violence (IPV) cases and relate recidivism risk factors to the psychosocial experiences of victims, thereby providing an evidential basis for victim protection, support, and practice-oriented intervention. The data consisted of 367 court decisions on IPV cases and 52 Crime Victim Impact Assessments. Recidivism risk factors were derived through analysis of court decisions, and psychosocial changes were examined based on victim statements in the Crime Victim Assessment Reports. Results showed that, compared with first-time offenders, recidivist offenders exhibited statistically significantly higher levels of planning, novel aggression, directly communicated threats, offender-related factors, environmental factors, and negative outcomes. Additionally, the recidivist offenders were characterized by choosing relatively older victims and having shorter relationship durations. Moreover, significant differences emerged across threat-assessment factors, highlighting the importance of identifying offender-related and environmental factors. Regarding victim experiences, fear and anxiety about retaliation were prominent, along with deterioration in daily functioning and somatization due to re-victimization, self-blame, and self-anger. Social harms were also observed, including relationship disruptions and difficulties in economic and work-related domain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IPV risk assessment should integrate relationship variables (victim age and duration of the relationship), threatening behaviors, and offender-related and environmental factors. This study further recommends establishing a multi-dimensional support system that ensures personal safety, includes proactive intervention and restores social support in victim protection practice.

Key words : intimate partner violence (IPV), recidivism risk factors; targeted violence, threat assessment, victim experiences, Crime Victim Impact Assessment